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681호 2012. 3. 22.(목)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44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고 제2012-4호(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24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거환경과 공동이용 시설이 열악한 서민 밀집지역을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 받는 희망복지 도시의 구현을 위함

2. 주요내용

- 행복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
- 주민 및 구청장의 책무
-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공모·선정 방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102, FAX 810-71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행복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상호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친환경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마을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 또는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사업의 선정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해당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등)

- ① 구청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구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1/3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해촉) ①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복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과 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제명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의 제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안 제3조)
-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용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u>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신 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략)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